

2019년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9. 5. 16.(목요일), 9:50
- 장 소 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석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- 심의위원 : 강호갑 위원, 정태호 위원, 최승수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,015건(안건번호 제2019-32788호~3397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- 그 밖에 NAS를 DDNS에 연결하여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2개 안건(제2019-32788호, 32789호)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복제·전송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결하고,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게시물 1개 안건(제2019-32790호)은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결하기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전차(제2019-61회)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- A 위원 : 회의록 공개하는데 추가의견 없음
- B 위원 : 이의 없음
- C 위원 : 같은 생각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

3. 안건상정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-32788호~3397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,015건임
(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)안전번호 제2019-32788호, 32789호는 개인이 NAS에 DDNS를 연결하여 무단 복제한 어문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-32788호, 3278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B 위원 : 각주에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, 당시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논의된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것이 당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었음
- B 위원 :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므로, 저작권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시정권고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
- 성원영 전문위원 :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정권고 필요성은 인정되나,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임
- C 위원 :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, 이

를 참고하여 심의의결하면 될 것으로 보임

다만,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추가 설명을 요청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보여주며)통상적인 심의 대상 게시물은 블로그, 카페 등에 게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

그런데 본 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NAS 주소만 있을 뿐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등이 없음

외부에서 NAS에 접속하려면 IP주소를 알아야 접속이 가능하며 외부에서 영문주소로 접속할 수 있도록 DDNS를 설정하면 영문주소를 입력하여 외부에서 NAS로 접속할 수 있음

- C 위원 : 심의대상 URL은 어떻게 알았는지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민원인이 신고하였다고 답변함

- C 위원 : 게시물의 URL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저작물명을 검색하거나, 채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URL을 공유했을 수도 있음

- C 위원 : NAS가 서비스 명칭인지 질의함

- 정현순 전문위원 : 서비스명칭은 아니며, 개인 저장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한 후 외부에서 접근가능하도록 DDNS에 주소를 등록하면 외부에서 해당 주소로 접속 시 개인 저장공간에 업로드된 저작물을 다운

받을 수 있음

- C 위원 : P2P로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함

- A 위원 : P2P와는 기술적으로 다름
외부에서 집 또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 IP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지만 도메인이름으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DDNS에 등록하는 것임
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하면 일반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처럼 도메인이름으로 접속할 수 있음
IP주소로도 접속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해 IP주소는 숨기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DDNS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임
서버에 저작물을 올려서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, 해당 서버가 회사에 있는 서버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애매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심의대상 URL이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작권침해 정보라고 판단해서 시정권고하면 되지만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이 없고 주소만 존재함
(NAS 접속 화면을 보여주면서)URL에 접속 시 압축파일이 확인되고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함

- A 위원 : 윈도우에서 파일을 찾을 때 탐색기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며, 서버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

- 최승수 위원 : △△△△△△△는 무엇인지 질의함
- A 위원 : 사람들이 해당 서버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한 도메인 이름임
- B 위원 : DDNS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메인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지 질의함
- A 위원 : DDNS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임
- 정현순 전문위원 : IP주소를 몰라도 DDNS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만 알면 접근할 수 있음
- 강호갑 위원 : LG U+에서 운영 중인 웹하드인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LG U+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자임
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은 이용자가 하는 것임
LG U+ 웹하드에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이라면 심의를 거쳐 LG U+에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하여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지만 심의안건은 사용자가 본인의 집에 있는 네트워크에 NAS를 연결하여 직접 파일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구성한 것임
- C 위원 :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부결의견으로 검토한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맞다고 답변함

- A 위원 :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했고 이번 심의대상 안건도 동일함
OSP가 직접 게시물을 올려서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설령 OSP 직접 게시에 대해 시정권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, 삭제 또는 전송중단 권한이 있는 OSP에 시정권고를 해야 함
본 건의 경우 도관사업자인 kt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도 부적절함

- A 위원 : 보호원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함
NAS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고 NAS를 통해서 저작물 공유가 굉장히 많이 이뤄질 수 있음
심의와 별개로 보호원 차원에서 NAS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임

- C 위원 : 불법을 기획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음
심의위원회에서 OSP 직접 게시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설계한 불법복제물 공유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면 결국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OSP 직접 게시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OSP 직접 게시에 대해 시정권고 근거 조항 제정 초기에는 심각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고,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의에 그쳤음

- B 위원 : 권리자가 직접 신고한 것인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출판사가 신고하였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도 동일한 NAS의 다른 불법복제물에 관해 심의하였음
- C 위원 : 예의 주시해야 함
- A 위원 : 민원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호원에 기대를 가지고 신고한 것임
 저작권법상 시정권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할 수 없는 사안임
 민원인에게는 심의에서 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부결되었지만 저작권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달할 필요가 있음
- C 위원 :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
- B 위원 : 부결하는 것에 동의함
- A 위원 : 같은 생각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32788호, 32789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

제2019-32790호는 소설을 구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안임

민원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하였음

우리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보호원에게 이른바 '3단계 채증자료'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

그런데 본 건의 경우 댓글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, 불법복제물등의 전송 화면, 불법복제물의 재생화면을 확인할 수 없음

- C 위원 :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는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

- B 위원 :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

- A 위원 : 같은 생각임
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32790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32791호~32794호는 네이버 블로그가 외국영화 한 편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

(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19-32791호는 이미 삭제된 게시물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
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

안전번호 제2019-32791호~3279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
- C 위원 :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가결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
- A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B 위원 : 같은 의견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32792호~32795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, 안전번호 제 2019-32791호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(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)안전번호 제2019-32796호는 '○○○○' 사이트에서 시판 중인 출판저작물의 복제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사안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-3279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B 위원 : 얼마 전 '○○○○' 사안에 대해 부결 했었는데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부결했던 안전은 '○○○○'가 아닌 '☆☆☆ ☆☆'

사이트의 '◇◇◇◇ ◇◇◇ ◇◇◇'이었고, ◇◇◇◇ ◇◇◇ ◇◇◇은 합법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
해당 출판저작물이 교수님에게만 제공하는 버전인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부결로 의결되었음

민원인이 부결사유를 알고 싶다고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음

민원인이 신고할 때 여러 개의 주소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, 보호원에서 '◇◇◇◇◇ ◇◇◇ ◇◇◇'을 제공하는 게시물을 심의 요청하였음
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원에서 요청한 안전에 대해 심의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임

민원인이 민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주소를 제공했고, 보호원은 해당 주소의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것임

- 최승수 위원 : 지난 심의에서는 저작권이 있는지 합법시장여부가 확인이 안 되어 부결했고 이번에는 확인되었다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
- 성원영 전문위원 : 맞다고 답변함
- C 위원 :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
- B 위원 : 가결하는데 동의함
- A 위원 : 의견에 동의함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32796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)안전번호 제2019-32797호~33971호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만화, 출판, 컴퓨터프로그램, 음악, 게임,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-32797호~3397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- C 위원 : 모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
- A 위원 : 가결로 의결하는데 동의함
- B 위원 : 같은 생각임
- 최승수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32797호~33971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-32788호~32790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, 안전번호 제2019-32791호

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, 안전번호 제 2019-32792호~33971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5. 23.

분과위원장 최승수

위원 강호갑

위원 정태호